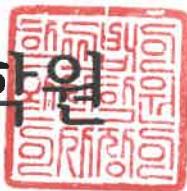

사무직원 인사규칙

학교법인 완산학원



학교법인완산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와 「학교법인완산학원 정관」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교법인완산학원 소속 사무직원(교육행정 및 시설관리)의 임용 및 시험, 징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2장 사무직원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사무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직원 인사규칙 제정 및 폐지
2. 사무직원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
3.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
4. 기타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법인 산하 학교 학교장(2명)과 행정실장(2명)으로 하며, 선출직 인사위원(1명)은 법인 전체 사무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무기명 비밀투표, 1인 1표)에 따라 선출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본 법인에 재직하는 모든 사무직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⑥ 인사위원회 임기는 3월 1일에 시작한다.
- ⑦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⑧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심의 된 사안을 즉시 임용권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한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간사는 회의자료를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자료의 관리와 보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임용

제7조 (신규채용 시험의 방법 등) ①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며,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에게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완산중학교장 추천 심사위원 1명
2. 완산여자고등학교장 추천 심사위원 1명
3.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추천 심사위원 1명
4.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외부 심사위원 2명



- ④ 최종합격자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⑤ 사무직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 ⑥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연도 사무직원 인사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⑦ 정규사무직원이 아닌 직원의 임용은 범인 산하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제8조 (일반승진) ①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 하위계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행한다.
② 현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근속기간(총경력)을 모두 충족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자를 승진임용 한다.

제9조 (근속승진) ① 7급 이하 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과 관할청의 지침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관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혜택으로 관리한다.

제10조 (대우직원선발) ① 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사람에 대하여 바로 위 직급의 대우사무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직원 선발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전직의 요건) 임용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사무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 다. 전직 예정직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제11조의2 (전직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 2.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12조 (전보) ①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1월 1일, 7월 1일 실시한다.

② 사무직원이 동일 학교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학교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휴직 및 복직) 사무직원의 휴직 및 복직은 「학교법인완산학원 정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14조 (직위해제) 사무직원의 직위해제는 「학교법인완산학원 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15조 (겸임) 이사장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 학교 소속 직원을 본직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법인업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제16조 (직위) ① 법인에 법인국장을 두며, 학교 소속의 행정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학교에 행정실장을 두며, 관할청 사립학교 보조정원 기준에 따라 최상위 직급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③ 법인국장 및 행정실장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배임, 부정청탁·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징계

제17조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① 비위 사무직원에 적법한 징계를 위해 학교법인에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한 교직원 1명

2.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 2명

3.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2명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소속 직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준용) 징계사무 절차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제19조 (재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위원은 완산학원 일반직 징계위원회 위원과 완산학원 법인이사장을 제외한 법인이사로 한다.



제20조 (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재심의 청구) ①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등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제22조 (재심위원회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심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인을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에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24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5조 (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6조 (재심위원회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리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자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사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폐기하고 처분권 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이유의 사유설명서

4. 증거의 판단

제28조 (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 청구인과 처분권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 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징계처분의 경정)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을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재심결정의 효력) 위 규칙 제26조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31조 (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재심위원회 간사 등)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교 소속 직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3조 (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제1차 이사회 2022.1.19. 변경)

제1조 이 규칙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제6차 이사회 2022.5.9. 변경)

제1조 이 규칙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